

「도시개발 업무지침」 일부개정안 검토의견

개 정 안	수정안	사 유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	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<u>다만,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각 도시공사가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 선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1-7-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필요시 별도 약정 변경을 통해 개정사안은 반영토록 한다.</u></p>	<p>○ 기 진행중인 사업지에 대한 소급적용 방지로 법적 형평성(신뢰성) 유지 및 사업자간 분쟁 방지</p> <p>-투자심의, 사업자 선정, 사업협약체결, 시의회 출자 동의, pfv설립, 구역지정 제안서 작성,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는 최소 3~4년 소요.</p> <p>-그 기간동안 공모비용, 운영비용, 업체와 용역계약 금액, 토지매입비용 등으로 수백억원의 비용 지출 (국가전체로 보면 최소 수천억원의 매몰비용 발생)</p> <p>-도시공사, 민간사업자, 금융기관간 투자약정을 맺고 진행해 온 사업지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려워 지거나, 사업자간 불협화음 발생.</p> <p>○ 국가기관에 의한 공모절차에 의거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 말소 및 손실부담은 공모에 참여한 순수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징벌이며, 국가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임.</p>

개정안	수정안	사유
		<p>-사업권 말소는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, 민간사업자의 이익제한등의 조항은 당사자간의 약정변경을 통해서도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임.</p>

개 정 안	수정안	사 유

○○부가가치통신망 ○○과 ○○○ 사무관(☎000-000-0000)